

혼인 문서 양식 해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혼인 문서 양식 해설

- 목 차 -

1. 혼인 문서 작성의 책임 ... 1
2. 혼인 문서 봉투 ... 1
 - 2.1. 혼인의 종류 ... 1
 - 2.2. 증빙 서류 ... 2
 - 2.3. 혼인 장소, 혼인성사 대장, 혼인 일시 ... 2
 - 2.4. 주례 사제의 문서 확인 ... 2
 - 2.5. 혼인의 주례권 ... 2
 - 2.6. 교구 직권자의 검열 ... 3
 - 2.7. 혼인 사목과 문서의 처리 확인 ... 3
3. 혼인 신청서(혼인 양식 제1호) ... 3
4.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혼인 양식 제2호) ... 3
 - 4.1. 진술서 작성 전의 참고 사항 ... 3
 - 4.2. 진술서의 작성 ... 4
5. 타 교파 혼인 금지와 미신자 장애 ... 6
 - 5.1. 타 교파 혼인 금지 ... 6
 - 5.2. 미신자 장애 ... 7
 - 5.3. 개신교 신자의 세례의 유효성과 혼종 혼인 ... 8
6. 혼인 공시(혼인 양식 제3호) ... 9
7. 혼인 장애 관면서(혼인 양식 제4호) ... 9
 - 7.1. 혼인 장애에 대하여 ... 9
 - 7.2. 혼인 장애와 관면/허가 ... 10
 - 7.3. '관면/허가를 위한 참조 사항' 설명 ... 11
8. 혼인 통지서(혼인 양식 제5호) ... 11
 - 8.1. 혼인 통지서의 작성과 활용 ... 11
9.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 허가서(혼인 양식 제6호) ... 12
 - 9.1. 혼인 거행 장소의 선택 ... 12
10. 혼인 주례권 위임서(혼인 양식 제7호) ... 13
 - 10.1. 혼인의 주례권의 법제화 과정 ... 13

10.2.	혼인의 주례권	… 13
10.3.	주례권 위임서의 작성	… 14
11.	혼인 증인의 확인서(혼인 양식 제8호)	… 14
12.	바오로 특전	… 15
12.1.	바오로 특전에 관한 법률	… 15
12.1.1.	바오로 특전의 기원	… 15
12.1.2.	바오로 특전의 법제화	… 15
12.1.3.	바오로 특전의 목적	… 16
12.1.4.	바오로 특전의 조건	… 16
12.1.5.	바오로 특전의 질문	… 17
12.1.6.	질문의 이행 시간	… 17
12.1.7.	질문의 관면(교회법 제1144조 2항)	… 18
12.1.8.	질문의 방법(교회법 제1145조)	… 18
12.1.9.	질문에 대한 비영세자 편의 회답	… 18
12.1.10.	새로운 혼인	… 18
12.1.11.	관면 혼인의 허가(교회법 제1147조)	… 19
12.2.	바오로 특전에 관한 문서의 작성	… 19
12.2.1.	바오로 특전을 위한 진술서(혼인 양식 특1호)	… 19
12.2.2.	바오로 특전을 위한 질문서(혼인 양식 특2호)	… 20
12.2.3.	바오로 특전을 위한 조사 결론 및 관면/허가와 선고(혼인 양식 특3호)	… 21
13.	사망 추정을 위한 조사서(혼인 양식 특4호)	… 21
14.	혼인 무효 선고를 위한 조사서/혼인 무효 선고서(혼인 양식 특5호)	… 23
14.1.	교회법적 형식의 결여에 따른 혼인 무효	… 23
14.2.	혼인 무효 선고를 위한 조사서/혼인 무효 선고서(혼인 양식 특5호)의 작성	… 23
15.	근본 유효화(Sanatio in radice)	… 25
15.1.	근본 유효화에 관한 법률	… 25
15.1.1.	무효한 혼인의 근본 유효화란?	… 25
15.1.2.	근본 유효화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 25
15.1.3.	근본 유효화의 허락권자	… 27
15.2.	문서의 작성	… 27
15.2.1.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청원자의 진술서(혼인 양식 특6호)	… 27
15.2.2.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사제의 건의서(혼인 양식 특7호)	… 27
15.2.3.	혼인의 근본 유효화 인정서(혼인 양식 특8호)	… 27

혼인 문서 양식 해설

1. 혼인 문서 작성의 책임

문서작성은 소속 본당사목구 주임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주례자, 혼인 거행 장소의 본당신부도 작성할 수 있다.

- 관련 교회법 -

제1067조 주교회의는 혼인 전에 필요한 혼인 당사자들의 심사와 아울러 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혼인 공고나 그 밖의 적절한 수단에 관한 규범을 정하여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를 성실히 지켜야 혼인을 주례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70조 혼인을 주례할 본당 사목구 주임 이외의 다른 이가 조사를 시행하였으면 그 결과를 되도록 빨리 공증된 문서로 그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혼인 문서 봉투

(각 양식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에서 설명)

2.1. 혼인의 종류

1) 교회법적 형식에 따라 치러야 하는 혼인은 적어도 한편이 가톨릭 신자인 경우이다 (교회법 제1059조 참조). 따라서 교회에서 치러지는 모든 혼인은 성사혼이나 관면혼 가운데 반드시 하나에 표시해야 한다.

* **성사혼**: 세례자와 세례자 사이의 혼인. 혼종 혼인의 경우도 개신교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혼인하는 것이므로 성사혼에 포함된다.

* **관면혼**: 세례자와 비세례자 사이의 혼인. 본당 사제가 미신자 장애를 관면해야 하므로 관면혼이라 부른다.

- 관련 교회법 -

제1055조 ①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 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

② 따라서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로 성사가 아닌 유효한 혼인 계약은 있을 수 없다.

제1086조 ① 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고 상대방은 세례 받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② 이 장애는 제1125조와 제1126조에 언급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관면되지 말아야 한다.

2) 그 밖의 혼인의 종류는 해당되는 경우에 표시한다.

* **단순 유효화혼**: 무효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혼인을 유효화시켜 주는 경우인데, 그 중에 단순 유효화혼은 형식의 결여나 결함으로 무효였던 혼인을 유효화시켜 주려고 혼인 예식을 다시 치러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 **바로로 특전혼**: 비신자끼리의 혼인에서 한편만 세례를 받고, 그 세례 받은 사람이 새로운 혼인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한다("12. 바로로 특전" 참조).

* **근본 유효화혼**: 국가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교회법적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 관할권자에 의하여 수여되는 은전이다("15. 근본 유효화" 참조).

* **혼종혼**: 가톨릭 세례자와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세례자 사이의 혼인은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관할권자의 명시적 허가를 받고 맺으면 혼종 혼인이 된다. 따라서 혼종 혼인은 세례자 사이의 혼인이므로 성사혼에 포함된다("5. 타 교파 혼인 금지와 미신자 장애" 참조).

2.2. 증빙 서류

1) 혼인 무효 선고서: 이전 혼인이 있었는데 교회 법정에서 무효 선고를 받은 경우, 혼인 무효 선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사망 추정 선고서: 이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사망 추정 선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망 추정 선고서는 국가법적 절차를 거쳐 확인한 이후에 작성해야 한다("13. 사망 추정을 위한 조사서" 참조).

3) 혼인 교리 이수증: 혼인 전에 교구에서 진행되는 혼인 교리(강좌)를 이수해야 하고, 관련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2.3. 혼인 장소, 혼인성사 대장, 혼인 일시

1) 혼인이 거행된 본당에서 혼인 문서를 보관하고 혼인성사 대장에 기록한다.

2) 본당 이외의 장소에서 혼인이 거행된 경우, 그 장소(신학교, 수도원, 기념 성당 등)가 소속된 본당의 사무실에서 혼인 문서를 보관하고 혼인성사 대장에 기록한다.

2.4. 주례 사제의 문서 확인

혼인을 주례하는 사제는 주례에 앞서 혼인 문서를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혼인을 주례하고 문서 봉투에 서명한다.

2.5. 혼인의 주례권(자세한 내용은 "10. 혼인 주례권 위임서" 참조)

1) 혼인의 주례권은 혼인이 거행되는 장소의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있다(교회법 제1109-1110조 참조).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16조 2항에 따라, 혼인의 주례권을 소속 교구 사제들에게 일반적으로 위임하였다.

2) 따라서 같은 교구의 다른 본당에서 혼인을 주례할 때에는 주례권을 위임받을 필요가 없다.

3) 자기의 소속 교구가 아닌 곳에서 혼인을 주례하는 경우에는 혼인이 거행되는 장소의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으로부터 혼인의 주례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이

주례권은 혼인의 유효성과 관련이 있다.

- 4) 혼인 주례자는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 장애가 없음에 대하여 확인하고, 또한 일반적 위임에 의하여 주례하는 때라도 그때마다 될 수 있는 대로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교회법 제1114조 참조).

2.6. 교구 직권자의 검열

혼인이 거행된 본당의 사제는 혼인 문서를 보관하고, 교구 직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시하여 검열을 받아야 한다.

2.7. 혼인 사목과 문서의 처리 확인

- 1) 혼인 전 신앙과 교리에 관한 지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 2) 양업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에서는 혼인성사 대장, 세례성사 대장, 교적 등에 기재하는 것과, 세례 받은 본당, 세례 문서가 있는 교구청, 교적이 있는 타 본당 등에 통지하는 것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확인하여 표시한다.

3. 혼인 신청서(혼인 양식 제1호)

이 혼인 신청서는 혼인 당사자가 작성하여 혼인 문서를 작성할 사제(혼인 당사자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제출한다.

4.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혼인 양식 제2호)

4.1. 진술서 작성 전의 참고 사항

- 아래 설명 참조 -

배우자의 부모나 친척은 동석할 수 없다. 이 진술서는 가장 중요한 문서로서, 사제가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를 각각 따로 만나 작성해야 하며, 타인에게 절대로 위임할 수 없다.

- 1) 사제는 혼인 당사자를 각각 따로 만나 진술서를 작성한다.
- 2) 신랑과 신부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고, 각자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한다.
- 3) 상단 우측에 성사혼인지, 관면혼인지를 표시한다(“2.1. 혼인의 종류” 참조).
- 4)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오로 특전의 대상일 경우에 그 대상자는,
 - ①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혼인 양식 제2호) 대신 ‘바오로 특전을 위한 진술서’(혼인 양식 특1호),
 - ② ‘바오로 특전을 위한 질문서’(혼인 양식 특2호),
 - ③ ‘바오로 특전을 위한 조사 결론’(혼인 양식 특3호)을 작성한다.두 사람 모두가 바오로 특전의 대상일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된다.

4.2. 진술서의 작성

- 1) 1-2항은 당사자와 부모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다.
- 2) 3항은 종교를 적는다. 3항의 (3)에서 세례를 준비 증인지를 묻는 것은 성사혼인지, 관면혼인지, 또는 바오로 특전혼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3) 4-8항은 온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전제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유효한 혼인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혼인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부모나 다른 사람이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 4) 부부의 선의과 자녀 출산이 혼인의 목적임을 알고 있어야 하며,
- 5)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 6)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 7) 또한 배우자와 친족(혈족 또는 인척)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 친족, 혈족, 인척에 대한 용어와 관련 법률 정리 -

친족, 혈족, 인척에 관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친족은 자신의 직계, 방계의 존속, 비속들을 말한다(민법 제768조 참조).
- ②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민법 제769조 참조).
- ③ 혼인을 할 수 없는 친족은 교회법적으로는 직계 또는 방계 4촌까지의 친족이고, 국가법적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친족)이다(교회법 제1091조, 민법 제809조 참조).
- ④ 혼인을 할 수 없는 인척은 교회법적으로는 직계 인척이고, 국가법적으로는 6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다(교회법 제1092조, 민법 제809조 2항 참조).
- ⑤ 국가 법률의 규범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한 혼인은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주례하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제1071조 1항 참조).

- 혈족과 인척 관련 교회법 -

제1091조 ① 직계 혈족에서는 합법적 혈족이든지 자연적 혈족이든지 모든 존속과 비속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② 방계 혈족에서는 4촌까지의 혼인은 무효다.

③ 혈족 장애는 중첩되지 아니한다.

④ 당사자들이 직계의 몇 촌 혈족인지 또는 방계의 2촌 혈족인지 의심되면 그 혼인은 결코 허가되지 아니한다.

제1092조 직계의 인척은 몇 촌이라도 혼인을 무효로 한다.

- 혈족과 인척 관련 민법 -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8) 9항은 타 교파 혼인 금지와 미신자 장애에 관한 사항이다(“5. 타 교파 혼인 금지와 미신자 장애” 참조).
- 9) 10-11항은 이전에 혼인한 일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는 혼인 유대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관련 교회법 -

제1085조 ① 비록 완결되지 아니한 혼인이라도 전의 혼인의 유대에 매여 있는 이는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
 ② 전의 혼인이 어떤 이유로든지 무효이거나 해소되더라도, 전의 혼인의 무효나 해소가 합법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다른 혼인을 적법하게 맺을 수 없다.

* 과거에 혼인한 일이 있다면, 이 혼인이 해소되었는지, 또는 무효 판결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근거도 함께 기록해야 한다. 참고로 혼인 유대가 해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교구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② 이전 혼인에서 교회법적 형식을 따르지 않아 ‘혼인 무효 선고를 위한 조사서’(혼인양식 특5호)를 첨부한 경우
- ③ 바오로 특전을 통해서 해소받은 경우 - 이 경우는 바오로 특전 혼인 대상자의 혼인 문서는 바오로 특전용(혼인 양식 특1-3호)을 이용해 작성해야 한다.
- ④ 교황의 특전을 받은 경우(베드로 특전,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의 해소 등)

10) 12-14항은 혼인의 무효 요건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다.

- ① 12항은 성교 불능 장애 여부

- 관련 교회법 -

제1084조 ① 혼인 전부터의 영구적 성교 불능은, 남자편이든지 여자편이든지 절대적이든지 상대적이든지, 그 본성상 혼인을 무효로 한다.
 ② 불능 장애가 의문되면, 법률의 의문이든지 사실의 의문이든지 간에 혼인이 저지되지도 말고, 또한 의문 중에는 무효로 선언되지도 말아야 한다.

- ② 13항은 사기에 따른 혼인 동의를 결함

- 관련 교회법 -

제1098조 부부 생활의 공동 운명체를 본성상 중대하게 혼란시킬 수 있는 상대방의 어떤 자질에 관하여 혼인 합의를 얻기 위한 범의에 속아서 혼인하는 이는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

- 관련 민법 -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③ 14항은 조건부 혼인에 따른 혼인 동의를 결합

제1102조 ① 혼인은 미래에 관한 조건부로 유효하게 맺을 수 없다.
② 과거 또는 현재에 관한 조건부로 맺은 혼인은 그 조건의 것이 존재하는가 아니하는가에 따라 유효하거나 무효하다.
③ 그러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은 교구 직권자의 서면 허가가 없는 한, 적법하게 부칠 수 없다.

11) 15항은 교회법적 혼인이 끝나면 국가법대로 혼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2) 16항은 기타 질문은 없는지 확인한다.

13) 혼인관계증명서의 확인과 기록 사항

- ① 혼인 당사자들의 이전 혼인 경력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 가운데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②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15조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 사항) ① 등록부 등의 기록 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29.).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③ ‘혼인관계증명서’가 불필요한 개인의 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혼인관계증명서’ 중에 ‘일부사항증명서’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 중 ‘일부사항증명서’는 이전 혼인과 이혼의 모든 과정을 드러내지 못하므로 전체 관계가 드러나는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혼인의 ‘전체관계증명서’라는 서식은 따로 없으므로 ‘일부 사항 증명’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5. 타 교파 혼인 금지와 미신자 장애

5.1. 타 교파 혼인 금지

- 관련 교회법 -

제1124조 세례 받은 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또는 영세 후에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고, 상대방은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 등록된 자 사이의 혼인은 관할권자의 명시적 허가가 없이는 금지된다.

1) 혼종 혼인 금지라고도 한다. 혼종 혼인은 가톨릭 세례자와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세례자 사이의 혼인을 말한다. 교회법은 이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혼인을 합당하게 이루려면 관할권자의 명시적 허가가 필요하다.

- 2) 금지는 교회법적으로 합법성과 관련이 된다. 곧 금지 사항을 어기면 불법이 된다.
- 3) 교회법 제1125-1126조는 이 혼인을 허가해 주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관련 교회법 -

제1125조 교구 직권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이러한 허가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

1.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는 자기가 신앙을 배반할 위험을 제거하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자녀들을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고 교육되도록 힘껏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성실한 약속을 하여야 한다.
2.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가 하여야 하는 이 약속들을 적당한 때에 상대방 당사자에 알려서 그가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의 약속과 의무를 참으로 의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3.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 특성에 대하여 양편 당사자들이 교육받아야 하고, 어느 편 당사자도 이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제1126조 항상 요구되는 이 선언과 약속을 하는 양식을 정하고, 또한 그것을 외적 법정에서 확인하고 비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다.

- 혼종 혼인을 하는 경우에도 교회법 제1108조가 규정하는 교회법적 형식이 지켜져야 한다.

5.2. 미신자 장애

- 관련 교회법 -

제1086조 ① 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고 상대방은 세례 받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② 이 장애는 제1125조와 제1126조에 언급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관면되지 말아야 한다.

- 1) 미신자 장애란 가톨릭 신자와 비세례자 사이의 혼인을 교회법적으로 무효로 하는 장애이다.
- 2) 이는 혼인 장애이기 때문에 이 혼인을 맺기 위해서는 관면을 받아야 한다.
- 3) 교회법 제1086조는 미신자 장애의 관면 조건으로 교회법 제1125조에 나와 있는 혼종 혼인의 허가 조건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5.1. 타 교파 혼인 금지” 참조).
- 4) 따라서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 9항의 질문과 그 아래의 서약서는 미신자 장애를 위한 관면이나 혼종 혼인에 대한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채우려는 것이다.
- 5) 9항의 질문은 가톨릭 신자가 아닌 배우자가 교회법의 타 교파 혼인 금지나 미신자 장애의 조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만일 모르고 있다면, 이를 알

려 주어야 할 것이다.

- 6) 신자 아닌 배우자에게는 가톨릭 교회로 입교하거나 세례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가톨릭 신자인 배우자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 자녀들이 천주교 세례와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참으로 의식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충분하다.

5.3. 개신교 신자의 세례의 유효성과 혼종 혼인

-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제58조 (성공회 신자의 세례)

성공회의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세례 문서가 없으면 어른의 경우에는 본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신빙성 있는 증인이, 그가 받은 세례의 예식을 설명하여 그 세례가 유효하게 집전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69조 2항;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제220조 참조).

제59조 (기타 교파 신자의 세례)

성공회 이외의 기타 개신교 교파의 교역자가 집전한 세례는 그 유효성이 의심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교회법 제869조 2항;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제220조 참조).

- 1.1. 그 교파의 교리가 세례성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 2.2. 그 교파의 교리는 세례성사를 인정하더라도 교역자가 세례성사를 올바르게 집전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제111조 (혼종 혼인)

(3항) 비가톨릭 영세자의 세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제는 혼종 혼인의 허가와 함께 미신자 장애의 관면까지 겸하여야 한다(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제336조 참조).

- 성공회의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는 일반적으로 유효하다고 간주한다(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Directorium Commune Coreae*, 제220항; 전국 공용 교구사제특별권한 해설, 59면;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58조).
- 그 외의 개신교 교파에서 주어진 세례는 일반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으로 본다(교회법 제869조 2항;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제220조 참조; 교회 일치 지도서 13-15항; 전국 공용 교구사제특별권한 해설¹⁾, 59면;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59조 참조).
-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개신교 세례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만일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정교회, 성공회를 비롯하여 유효성을 인정받은 개신교파에서 세례 받은 이와 가톨릭 신자 사이의 혼인은 미신자 장애에 대한 관면은 필요가 없고, 혼종 혼인만 허가해 주면 된다. 혼종 혼인은 세례자와 세례자 사이의 혼인이므로 성사혼이 된다(교회법 제1055조 1항).

1) 정진석, 『전국 공용 교구사제특별권한 해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8, 59면.

6. 혼인 공시(혼인 양식 제3호)

교회법 제1066조와 제1067조의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혼인 공시를 실시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일부 사항 증명’이라고 표시되지 않은)로 확인할 수 있으면, 혼인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관련 교회법 -

제1066조 혼인이 거행되기 전에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 거행에 장애되는 것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제1067조 주교회의는 혼인 전에 필요한 혼인 당사자들의 심사와 아울러 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혼인 공고나 그 밖의 적절한 수단에 관한 규범을 정하여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를 성실히 지켜야 혼인을 주례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해서는 “4.2. 진술서의 작성”의 “13) 혼인관계증명서의 확인과 기록 사항”에 대한 설명 참조

7. 혼인 장애 관면서(혼인 양식 제4호)

7.1. 혼인 장애에 대하여

혼인의 장애는 혼인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교회법이 정한 혼인 무효 장애에는 다음의 12가지가 있다.

- 1) **연령 장애**: 법정 연령이 안 된 사람은 혼인을 맺을 수 없다(교회법 제1083조 1항: 남자는 16세의 만료, 여자는 14세의 만료; 민법 제807조: 남녀 만 18세).
- 2) **성교 불능 장애**: 혼인 전부터의 영구적 성교 불능은 그 본성상 혼인을 무효로 한다(교회법 제1084조 1항).
- 3) **혼인 유대 장애**: 이전 혼인의 유대에 매여 있는 이는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교회법 제1085조 1항). 새로운 혼인을 맺기 위해서는 이전의 혼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효로 판결나거나, 또는 해소되어야 한다.
- 4) **미신자 장애(혼종 혼인 금지)**: “5. 타 교파 혼인 금지와 미신자 장애” 참조.
- 5) **성품 장애**: 성품에 선임된 이들은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교회법 제1087조).
- 6) **수도 서원 장애**: 수도회에서의 정결의 공적 종신 서원에 매여 있는 이들은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교회법 제1088조).
- 7) **유괴 장애**: 혼인을 맺을 의도로 유괴한 남자와 유괴당하거나 적어도 잡혀 있는 여자 사이에는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다(교회법 제1089조).
- 8) **범죄 장애**: 어느 특정인과 혼인을 맺을 의도로 그이의 배우자나 자기의 배우자를 죽게 한 이는 그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교회법 제1090조).

- 9) **혈족 장애:** 법률이 정한 혈족의 범위 이내에서는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다.
- 혼인을 할 수 없는 혈족은 교회법적으로는 직계 또는 방계 4촌까지의 혈족이고, 국가법적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이다(교회법 제1091조; 민법 제809조 1항 참조).
- 10) **인척 장애:** 법률이 정한 인척의 범위 이내에서는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다.
- 혼인을 할 수 없는 인척은 교회법적으로는 직계 인척이고, 국가법적으로는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이다(교회법 제1092조; 민법 제809조 2항 참조).
- 11) **내연 관계 장애:** 내연 관계 안에서 출생한 배우자의 직계 1촌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교회법 제1093조).
- 혈족과 인척에 대해서는 “4.2. 진술서의 작성” 중 “7) 또한 배우자와 친족(혈족 또는 인척)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는 설명 참조.
- 12) **양자 관계 장애:** 입양으로 말미암아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법정(法定) 친족으로 결합된 이들 사이는 혼인을 유효하게 맺을 수 없다(교회법 제1094조). 국가법적으로는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민법 제809조 3항 참조).

7.2. 혼인 장애와 관면/허가

장애의 구분		장애의 종류
신정법에 따른 장애		성교 불능 장애 제1084조 1항/혼인 유대 장애 제1085조/혈족 장애 제1091조 1항(직계 및 방계 2촌까지)
교회법에 따른 장애	교황청(또는 교구 직권자)에 관면이 유보된 장애	성품 장애 제1087조/수도 서원 장애 제1088조/범죄 장애 제1090조
	관면할 수 있으나 국가법에 어긋나므로 직권자의 허가가 필요한 관면(교회법 제1071조 1항 2호)	연령 장애 제1083조/혈족 장애 제1091조(직계와 방계 2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인척 장애 제1092조/양자 관계 장애 제1094조
	건전한 풍습을 해치는 추문으로 관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	내연 관계 장애 제1093조/유괴 장애 제1089조
	본당 사목구 주임이 관면할 수 있는 장애	미신자 장애 제1086조

- 1) 본당 사목구 주임이 관면하거나 허가할 수 있는 장애/금지는 미신자 장애와 타교파(혼종) 혼인 금지뿐이다. 기타 다른 교회법에 따른 장애는 교황청이나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 2) 미신자 장애 관면과 타 교파 혼인의 허가에 대해서는 “5. 타 교파 혼인 금지와 미신자 장애” 참조
- 3) 이 관면과 허가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주어질 수 있다(교회법 제1125

조 참조). 따라서 관면/허가서에 반드시 관면/허가의 사유를 적어야 하고, 그 사유의 대표적인 예는 ‘혼인 장애 관면서’(혼인 양식 제4호)의 뒷면에 제시되어 있다.

제1125조 교구 직권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이러한 허가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

7.3. ‘관면/허가를 위한 참조 사항’ 설명

- 1) 관면/허가의 권한: 전국 공용 교구사제특별권한 제15조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08조에 따라 교회법에 의한 모든 장애에 대한 관면/허가의 권한이 교구 사제에게 주어져 있다. 다만 “7.2. 혼인 장애와 관면/허가”의 설명에 따라 실질적으로 관면/허가 할 수 있는 내용은 미신자 장애 관면과 혼종 혼인의 허가뿐이다.
- 2) 관면/허가의 형식: 관면/허가한다는 사제의 의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외적 법정에서 유효하도록 관면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관면서(허가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지 않으면, 혼인 자체가 무효 또는 불법혼이 된다.
- 3) 관면/허가의 사유: 문서 참조
- 4) 관면/허가의 조건: 문서와 “5. 타 교파 혼인 금지와 미신자 장애” 참조.

8. 혼인 통지서(혼인 양식 제5호)

8.1. 혼인 통지서의 작성과 활용

- 1) 혼인이 이루어진 본당에서는 혼인성사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혼인 문서 봉투를 보관한다(교회법 제1121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17조 1항 참조).
- 2) 혼인 거행 사실과 모든 신분 변동 사항은 세례성사 대장에도 기재되어야 한다(교회법 제535조 2항; 제1122조; 제1123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17조 3항 참조).
- 3) 혼인의 종류는 성사혼/관면혼 중에 반드시 하나에 표시하고, 단순 유효화혼/바로로 특전혼/근본 유효화혼/혼종혼 중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표시한다(“2.1. 혼인의 종류” 참조).
- 4) 혼인이 이루어진 본당의 사목구 주임은 혼인 통지서를 3부 작성하여 세례 받은 본당과 교구청, 그리고 교적이 있는 본당에 혼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세례 받은 본당, 교적이 있는 본당, 혼인 거행지 본당이 같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 양업 시스템을 운용할 때에도 생략 가능: 아래 “7) 양업 시스템의 경우” 참조).
- 5) 혼인 통지서를 받은 본당의 주임 사제는 세례성사 대장 또는 교적에 이 사실을 기재한 후, ‘혼인 통지 접수 확인서(회신용)’를 기록하여 절취하지 말고 본양식 그대로 반송한다(양업 시스템을 운용할 때에는 생략 가능: 아래 “7) 양업 시스템의 경우” 참조).
- 6) 혼인 거행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 확인서를 받으면 해당 혼인 문서와 함께 혼인

문서 봉투에 보관한다.

- 7) 양업 시스템의 경우: 한국 천주교회 내에서 양업 시스템으로 교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세례 받은 본당과 교구청, 교적이 있는 본당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므로, 이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세례 받은 본당과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 기록 사실을 확인하는 연락이 오면, 혼인 거행지 본당에서 이 문서를 출력하여 혼인 문서 봉투에 함께 보관한다.

9.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 허가서(혼인 양식 제6호)

9.1. 혼인 거행 장소의 선택

- 1) 혼인의 주례권은 혼인의 거행지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있다. 혼인 거행 장소는 배우자들의 본당 사목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곳에서 거행되기 위해서는 적법성을 위하여 소속 직권자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은 해당 신자의 장애 없음에 대하여 확인하고, 혼인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관련 교회법 -

제1114조 혼인의 주례자는 범규범에 따른 혼인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신분에 대하여, 또한 일반적 위임에 의하여 주례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될 수 있는 대로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면 불법하게 행하는 것이다.

제1115조 혼인은 혼인 당사자들 중 한편이 주소지나 준주소지나 1개월간 체재한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또는 주소 부정자의 경우에는 현재 체재하는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소속 직권자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거행될 수 있다.

- 관련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

제116조 (혼인 예식 주례)

(4항) 혼인 주례자는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 장애가 없음에 대하여 확인하고, 또한 일반적 위임에 의하여 주례하는 때라도 그때마다 될 수 있는 대로 사목구 주임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따라서 본 허가서는 가톨릭 신자인 혼인 당사자들의 교적이 있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 작성한다. 같은 교구 내에서라도 혼인 당사자들의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 혼인이 거행될 때에는, 혼인 형식의 적법성을 위하여 혼인 당사자들이 소속된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0. 혼인 주례권 위임서(혼인 양식 제7호)

10.1. 혼인의 주례권의 법제화 과정

1) *Tametsi* 교령

혼인의 교회법적 형식에 대해 처음 다룬 교령은 1563년 11월 11일에 나온 트리엔트 공의회 *Tametsi* 교령이다. 이 교령은 특별히 비밀 혼인에 대해 다루면서, 비밀 혼인의 위험성을 언급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비밀 혼인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었다. 그리고 혼인의 교회법적 형식을 규정했는데, 혼인 당사자의 본당 사목구 주임과 두 세 명의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였다. 곧 *Tametsi* 교령은 혼인의 주례권을 속인적으로 보고, 혼인 당사자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준 것이다.²⁾

2) *Ne Temere* 교령

그러나 1908년에 나온 *Ne Temere* 교령은 혼인의 주례권에 대해 속지적 원칙을 적용하여, 혼인 거행지의 본당 신부나 교구 직권자가 직무상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에 대하여 주례권을 갖는다는 기준을 제정하였다.³⁾ 1917년 교회 법전은 이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⁴⁾ 1983년 교회 법전까지 그대로 이어졌다.⁵⁾

따라서, 자신의 관할권(본당, 교구) 밖에서 혼인을 주례하고자 할 때에는 혼인 거행지의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으로부터 주례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16조 2항에 따라, 혼인의 주례권을 소속 교구 사제들에게 일반적으로 위임하였다.

10.2. 혼인의 주례권

본당 사목구 주임이 자기 본당의 소속자에 대하여 주례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혼인에 대하여 갖는 것이므로, 혼인의 거행지 본당 사목구 주임이 관할권을 갖는다(속인적 주례권의 예: 교회법 제1110조 참조).

- 관련 교회법 -

제1109조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는 소속자들뿐 아니라 비소속자들이라도 두 당사자 중 한편이 라틴 예법에 속하기만 하면 직무상 그들의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한다. ……

제1111조 ①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직무를 유효하게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 혼인을 주례할 특별 권한을 사제들이나 부제들에게 일반적으로도 위임할 수 있다.

2) W.van Ommeren, *Tametsi* in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 13,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Washington D.C. 2003, p. 749.

3) Francesco Bersini, *Il diritto canonico matrimoniale*, p. 151.

4) 1917년 교회 법전, 제1095조 - § 1. *Parochus et loci Ordinarius valide matrimonio assistunt: 2.º Intra fines dumtaxat sui territorii; in quo matrimoniis nedum suorum subditorum, sed etiam non subditorum valide assistunt.*

5) 교회법 제1109조.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는 소속자들뿐 아니라 비소속자들이라도 두 당사자 중 한편이 라틴 예법에 속하기만 하면 직무상 그들의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한다.

- 관련 전국 공용 교구사제특별권한 -

제13조 (혼인 주례권)

본교구 어디에서나 혼인식을 주례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반적으로 위임한다(교회법 제1108조; 제1111조). 다만, 혼인식 거행에 관한 모든 교회법 제조항(제1063조 이하)과 전국 주교회의 및 본교구장이 세운 규칙을 준수하고, 아울러 혼인 당사자들의 사목구 주임의 권리를 존중하며, 혼인식을 거행한 사목구에서 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121조). 본교구 소속이 아닌 사제는 비록 다른 교구에서 일반적 권한을 갖고 있을지라도, 본교구 내에서는 혼인식을 주례할 권한을 자동적으로 위임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본 교구의 일반적 권한을 청해서 받거나 또는 교구장에게서나 혼인식 거행 장소의 사목구 주임에게서 번번이 권한을 받아야 한다. 만일 사제가 이러한 위임을 받지 않고 혼인식을 주례하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제1108조).

- 관련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

제116조 (혼인 예식 주례)

(1항) 혼인 예식 주례권은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에게 있다(교회법 제530조 4호; 제1108조 참조).
(2항) 사제는 소속 교구 내에서 혼인 예식 주례권을 일반적으로 위임받았다(전국 공용 교구사제특별권한, 제13조 참조).
(3항) 타 교구에서 혼인을 주례하는 사제는 그 장소의 교구 직권자나 사목구 주임으로부터 주례권을 위임받아야 한다(교회법 제1108조; 제1111조 참조).
(4항) 혼인 주례자는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 장애가 없음에 대하여 확인하고 또한 일반적 위임에 의하여 주례하는 때라도 그때마다 될 수 있는 대로 사목구 주임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교회법 제1114조 참조).

10.3. 주례권 위임서의 작성

- 1) 이 ‘혼인 주례권 위임서’는 혼인이 거행되는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 작성한다. 혼인을 주례할 권한은 혼인이 거행되는 곳의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있다(교회법 제1108조; 제1109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16조 1항 참조).
- 2)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16조 2항에 따라, 같은 교구 소속 사제에게는 주례권 위임이 필요 없다.
- 3) 타 교구 소속 사제(부제) 또는 혼인이 거행되는 교구 내에서 혼인을 주례할 특별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수도회 소속 사제가 혼인을 주례할 경우, 혼인의 유효성을 위하여, 혼인 거행 장소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서 주례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11. 혼인 증인의 확인서(혼인 양식 제8호)

- 1) 혼인의 교회법적 형식에 따라 두 명의 증인은 혼인의 유효성을 위해 필요하다.
- 2) 증인의 조건은 성별, 종교 등에 관계없이 혼인이 공적으로 치러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연령적,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 관련 교회법 -

제1108조 ①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들 앞에서, 아래의 교회법 제조문들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

12. 바오로 특전

12.1. 바오로 특전에 관한 법률

12.1.1. 바오로 특전의 기원

1) 코린토 1서 7장 12-15절의 말씀에 기원을 두고 제정된 특전이다.

(12절)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 어떤 형제에게 신자 아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13절) 또 어떤 부인에게 신자 아닌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14절) 신자 아닌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신자 아닌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더러울 터이지만, 사실은 그들도 거룩합니다. (15절) 그러나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고 헤어지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2) 초대 교회의 박해 상황에서 믿음 깊은 신자는 신앙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세가 확장되면서, 만일 부부 가운데에서 한편만 세례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비영세자 편 배우자는 이에 대해 적개심을 갖게 되고 평화로운 부부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공동체에 서신을 보내 설명한 것이다.

12.1.2. 바오로 특전의 법제화

- 1)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근거로 그리스도교는 4세기 이래로 “비신자 편 배우자가 화목하게 함께 살기를 거부하면 그리스도교 개종자는 새로 혼인을 맺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 2) 그라시아노 법령집(12세기에 편찬된 종합 법령집): 양편이 비영세자의 상태에서 혼인한 뒤에 한편이 영세하는 때에 비영세자 편이 갈라져 떠나가서 다른 이와 재혼하면, 영세자 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3) 1917년 교회 법전: 제1126조: 비영세자들 사이에 맺은 이전 혼인의 유대는 신자편이 실제로 새 혼인을 유효하게 맺는 때에 해소된다.
- 4) 1983년 교회 법전: 제1143조 1항: 두 비영세자들 사이에 맺은 혼인은 바오로 특전에 따라서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을 맺는 그 사실 자체로써 해소된다.

12.1.3. 바오로 특전의 목적

신앙의 유익, 개종자의 자유를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전교 지방에 매우 유용한 특전이다.

12.1.4. 바오로 특전의 조건

- 관련 교회법 -

제1143조 ① 두 비영세자들 사이에 맺은 혼인은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갈라선다면 세례 받은 편 당사자의 신앙의 혜택을 위한 바오로의 특전에 의하여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을 맺는 그 사실 자체로써 해소된다.

②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세례 받은 편 당사자와 동거하거나 창조주에 대한 모욕 없이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갈라서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영세 후에 상대편 당사자에게 갈라설 정당한 원인을 주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영세자 남녀 간의 혼인

- 첫 번째 혼인의 A - B 양편 모두 비신자여야 한다. 한편이 세례를 받았으면 그 유효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불가하다.

2) 합법적이고 유효한 혼인이어야 한다.

- 국가법상 합법혼을 말한다. 교회법상으로 합법혼인 경우는 이미 적어도 한편이 신자가 되기 때문에 적용의 가능성이 없다.

3) 한편 당사자만의 영세

- 세례를 받은 사람(A)에게 적용된다. A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B가 이 특전을 받을 수는 없다. 이는 세례 받은 사람 A의 신앙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조문이기 때문이다.

- 만일 A가 세례를 받을 준비 중이라고 하면, 세례 전에 미리 준비(혼인 일정, 서류 준비 등)를 시키고, 세례 직후에 바오로 특전혼을 해 주면 된다.

- 바오로 특전혼을 해 주기 전에 B마저 세례를 받으면 이 혼인이 성사혼으로 승격 되었으므로 특전을 적용해 줄 수 없다.

4) 비영세자 편 배우자(B)의 떠남

- A가 세례를 받은 것 때문에 B가 부부 생활을 가르고 떠났어야 한다.

- 이미 이혼하여 떠난 경우

- 헤어지는 원인을 영세자 편이 제공하지 않았어야 한다. 곧 A가 간통을 하거나 또는 B를 학대하여 합법적 별거의 원인을 준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12.1.5. 바오로 특전의 질문

- 관련 교회법 -

제1144조 ①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을 유효하게 맺기 위하여는, 세례 받지 아닌 편 당사자에게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를 질문하여야 한다.

1. 그이도 세례 받기를 원하는지?
 2. 적어도 창조주에 대한 모욕 없이 세례 받은 편 당사자와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는지?
- ② 이러한 질문은 영세 후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구 직권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질문을 영세 전에 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또한 질문을 할 수 없거나 소용없다는 것이 적어도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확인된다면 영세 전이거나 후이거나 질문을 관면할 수 있다.

- 1) 교회법 제1144조의 질문 두 가지를 B에게 행해야 한다. 곧 “그이도 세례 받기를 원하는지” 여부와 “적어도 창조주에 대한 모욕 없이 세례 받은 편 당사자와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
- 2) 여기에서 B가 세례 받기를 원하지 않아야 하고, 평화로운 동거도 원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A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어야 하고, B가 실제로 A로부터 마음이 떠났어야 한다는 것이다.
- 3) 질문에 대한 대답: B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대답하면 그가 부부 생활을 가르고 떠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B가 돌아올 마음 없이 부부 생활을 가르고 떠나갔으면 법적으로 떠난 것이 입증된다.
- 4) 실제적인 확인
 - B가 세례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만일 B가 세례를 받았다면 A의 세례로 이전 혼인이 성사혼으로 격상되기 때문이다.
 - B가 A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신앙적, 인간적).

12.1.6. 질문의 이행 시간

- 1) 질문은 A가 세례를 받은 후에 행해야 한다. 그러나 교구 직권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입교자의 영세 전에 질문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교회법 제1144조 2항). 한국 교회에서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18조 1항에 따라 이 허가권이 소속 교구 사제들에게 위임되었다.
- 2) 대개의 경우 바오로 특전을 통한 혼인은 불법 혼인을 살고 있는 경우, 이 특전으로 혼인을 합법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세례와 바오로 특전혼 사이의 시간 간격이 너무 멀어지면 A가 세례 후에 다시 불법 혼인에 떨어지게 된다. 세례와 혼인을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려면 바오로 특전혼을 위한 준비(질문 포함) 등이 세례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12.1.7. 질문의 관면(교회법 제1144조 2항)

- 1) 법에 따른 질문은 바로로 특전을 사용할 근거가 되는 조건이다. 질문을 할 수 없거나 소용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면 이를 관면할 수 있다.
- 2) 이 경우는, A의 이전 배우자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경우(질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이전 배우자의 대답이 부정적일 것을 미리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경우, 또는 이미 A가 국가법적으로 이혼하고, 또 그 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재혼하였고 자녀까지 낳은 경우(질문이 불필요한 경우) 등이다.
- 3) 이러한 사실을 재판 외 약식 절차 방식으로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질문을 관면할 수 있다(혼인 양식 특3호).

12.1.8. 질문의 방법(교회법 제1145조)

- 1) 사제가 직접 질문하는 경우(1항)
 - 질문은 원칙상 입교자 편 교구 직권자의 권위에 따라야 한다(1항).
 - 한국 교회에서는 전국 공용 교구사제특별권한 제18조에 따라, 사제가 질문할 수 있으므로 혼인을 주례하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보좌가 할 수 있다.
 - 상대편 배우자가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유예 기간을 정해서 보내는데, 혼인 문서 양식에는 30일의 유예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 2) 당사자가 직접 질문하는 경우(2항)
 - 사제가 첫 번째 배우자에게 질문하기 어려운 경우, 입교자 편 당사자 자신이 직접 사사로이 질문을 할 수도 있다.
 - 이 경우에는 위의 형식이 준수되기 어려우므로, 질문을 행한 사실과 그 결과가 외적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두 명의 증인이 서명한다.

12.1.9. 질문에 대한 비영세자 편의 회답

- 회신이 없는 경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부정적 회답으로 간주한다.
- 첫째(그이도 세례 받기를 원하는지)는 긍정, 둘째(적어도 창조주에 대한 모욕 없이 세례 받은 편 당사자와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는지)는 부정인 경우 ⇒ 대답의 이중성으로 부정적 회답으로 간주한다.
- 첫째는 부정, 둘째는 긍정인 경우 => 대답의 성실성에 대해서 판별해야 한다.

12.1.10. 새로운 혼인

- 위의 조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A는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다.
- A의 새로운 혼인을 맺는 그 사실 자체로써 이전의 혼인이 해소된다(교회법 제1143조 1항 참조).

12.1.11. 관면 혼인의 허가(교회법 제1147조)

- 바오로 특전은 새 입교자의 신앙을 보호하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므로 이 특전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톨릭 신자와 새로운 혼인을 맺어야 한다(교회법 제 1146조).
- 그러나 “중대한 이유”(교회법 제1147조)가 있으면 미신자 장애 관면이나 혼종 혼인의 허가를 통해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과도 혼인할 수 있다. 이 관면/허가의 권한은 교구 직권자에게 있으나, 한국 교회에서는 전국 공용 교구사제특별권한에 따라 사제에게 위임되었다.

12.2. 바오로 특전에 관한 문서의 작성

12.2.1. 바오로 특전을 위한 진술서(혼인 양식 특1호)

- 1) 진술서의 작성은 사제가 직접 한다. 상자 안의 설명 참조(배우자의 부모나 친척은 …… 위임할 수 없다.).
- 2) 배우자 중 바오로 특전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혼인 양식 제2호) 대신 ‘바오로 특전을 위한 진술서’(혼인 양식 특1호), ‘바오로 특전을 위한 질문서’(혼인 양식 특2호), ‘바오로 특전을 위한 조사 결론’(혼인 양식 특3호)을 작성한다. 바오로 특전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두 사람 모두가 바오로 특전의 대상일 경우는 두 사람 모두 혼인 양식 특 1, 2, 3호를 작성한다.
- 3) 1항과 2항에는 본인과 부모의 인적 사항을 기록한다.
- 4) 3항에는 본인의 종교에 대하여 기록한다.
 -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경우, 타 교파에서 세례를 받은 경우, 세례를 준비 중인 경우 중에서 해당 사항에 기록한다.
 - 바오로 특전의 대상은 이전 배우자와 헤어진 이후에 세례 받은(또는 세례 받은 이후에 이전 배우자와 헤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상자는 이미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또는 세례를 준비 중이어야 한다. 세례를 준비 중인 경우는 세례를 먼저 받도록 하고 바오로 특전혼을 해 주어야 한다.
 - 교회법 조항에서는 세례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은 사람의 신앙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바오로 특전의 조건은 가톨릭 교회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⁶⁾
 - 타 교파에서 세례를 받은 경우는 첫 번째 혼인 이후에 이루어졌어야 하며, 적어도 가톨릭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예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 5) 4항에는 이전 혼인에 대한 질문
 - 첫 번째 혼인의 배우자는 현재까지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야 한다.

6) J.F.Castano, *Il sacramento del matrimonio*, Tipolitografia Pioda Gianfranco, Roma 1991, p. 492.

- 혼인 형식에 대하여/첫 번째 배우자의 세례 여부에 대하여: 다음 설명 참조.
- ① 만일 첫 번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톨릭 신자였다면 첫 번째 혼인이 성당에서 이루어진 관면혼일 것이고, 이후 바오로 특전 청원자의 세례와 동시에 성사혼이 되어, 바오로 특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만일 첫 번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톨릭 신자였는데, 첫 번째 혼인이 성당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교회법적 형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혼인 양식 특5호를 작성하여 본당 사제가 무효 선언을 할 수 있다.
- ③ 만일 첫 번째 배우자가 혼인한 후에 세례를 받았다면, 바오로 특전 청원자의 세례와 동시에 성사혼이 되어, 바오로 특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혼인 신고와 이혼 여부에 관하여
- ① 한국 민법상 혼인은 혼인 신고로 이루어지므로(민법 제812조 참조) 첫 번째 혼인이 유효하려면 민법상 혼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 ② 민법상의 이혼은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만, 신자의 영신적 이익을 위하여 민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은 혼인은 바오로 특전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당사자들의 또 다른 혼인의 여부: 첫 번째 혼인과 바오로 특전을 통한 두 번째 혼인에서 당사자들이 또 다른 혼인 또는 이혼 경력이 있다면, 바오로 특전혼의 가능성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6) 바오로 특전을 얻기 위한 질문

- 질문의 내용: “12.1.5. 바오로 특전의 질문” 참조
- 질문 시간: “12.1.6. 질문의 이행 시간” 참조
-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른 처리: “12.1.9. 질문에 대한 비영세자 편의 회답” 참조.

7) 5항에는 현재의 혼인에 대한 질문

- 언급된 혼인 이외의 혼인이 또 있다면 그 혼인에 대한 사항도 점검
- 새로운 혼인을 맺는 그 사실 자체로써 이전의 혼인이 해소된다(교회법 제1143조 1항)는 사항을 확인해 준다.
- 만일 새로운 혼인을 맺기 위한 배우자가 천주교 신자가 아닐 경우에는 관면/허가를 얻기 위한 서약을 하고, 필요한 관면이나 허가서[혼인 장애 관면서(혼인 양식 제4호)]를 작성해야 한다.

8) ‘혼인관계증명서’의 확인과 기록 사항(앞의 설명 참조)

12.2.2. 바오로 특전을 위한 질문서(혼인 양식 특2호)

- 이 질문서는 바오로 특전 대상자의 첫 번째 배우자에게 보내는 질문서이다.
- 바오로 특전의 질문, 질문의 이행 시간, 질문의 관면, 질문의 방법, 질문에 대한 비영세자 편의 회답 등에 대한 내용은 관련 해설 참조.
- 질문 방법에는 사제가 직접 하는 경우와, 입교자 편 당사자가 하는 경우가 있다(관련 해설 참조).

12.2.3. 바오로 특전을 위한 조사 결론 및 관면/허가와 선고(혼인 양식 특3호)

- 1) 바오로 특전을 위한 조사를 마치면, 사제는 결론을 내리고 이 문서를 작성한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 ① 바오로 특전을 위한 질문 결과, 특전을 적용할 수 있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 특전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 ② 바오로 특전을 위한 질문서 회신이 정한 기일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첫 번째 배우자에게 질문서를 보냈는데, 30일 이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
 - ③ (ㄱ) 바오로 특전을 위한 질문이 불가능하다.: 전 배우자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경우
(ㄴ) 바오로 특전을 위한 질문이 필요 없다.: 이전 배우자의 대답이 부정적일 것을 미리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경우, 또는 이미 A가 국가법적으로 이혼하고, 또 그 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재혼하였고 자녀까지 낳은 경우
- 2) 관면/허가와 선고
 - ① 바오로 특전 대상자의 첫 번째 배우자에게 보낸 질문이 답이 없거나 또는 질문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는 경우, 첫 번째 배우자에게 대한 질문을 관면한다.
 - ② 바오로 특전 대상자가 새로이 맺게 될 혼인에서, 그 배우자가 세례자가 아닌 경우는 미신자 장애를 관면해 주고, 타 교파의 세례자인 경우는 혼종 혼인에 대한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5. 타 교파 호인 금지와 미신자 장애 참조”).
 - ③ 이 모든 절차를 마치면, 세례를 받고 새로운 혼인을 맺으려는 바오로 특전 대상자에게 바오로 특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선고한다. 그리고 두 배우자가 혼인을 맺을 수 있음을 선언한다.
 - ④ 혼인 문서 작성을 모두 마치고, 혼인 예식을 교회법적 형식에 따라 집전해 준다.

13. 사망 추정을 위한 조사서(혼인 양식 특4호)

- 교회나 국가의 공식 사망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제는 개인 지식이나 믿을 만한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이전 배우자의 사망에 대하여 심증이 있다면 교구장의 허락 없이 재판 외 약식 소송으로 이전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추정 선고를 할 수 있다. 만일 이전 배우자의 사망에 대하여 의심이 있다면 사제는 교구 직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 교구장의 권한을 교구 사제들에게 위임하여 전국 공용 교구사제특별권한 제20조를 만들었고, 이것이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19조에 수록되어 있다.
- 재판 외 약식 소송: 사제가 위에 언급한 사망 추정을 선고하려면, 먼저 재판 외 약식 소송으로 사망에 대한 윤리적 확실성을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망 추정을 위한 조사서 및 선고서’의 문서 양식이 마련되어 있다.
- 그러나 사제는 성급하게 사망 추정을 선고하기보다는 한국의 국가법 규정에 따라 당

사자들이 실종 신고나 부재 신고를 받도록 중용해야 한다.

- 배우자의 사망 추정에 따라 재혼한 경우에 사망이 추정되었던 배우자가 실제로 생존하면 먼저의 혼인 유대가 부활하고, 나중의 혼인은 먼저의 혼인 유대 장애 때문에 무효가 된다.

- 실종 신고에 관한 교회법 -

제1707조 ① 배우자의 사망이 교회나 국가의 공증된 문서로 증명될 수 없는 때마다,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의 유대가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사망 추정에 대한 선언이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내려진 다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구장 주교는 적절한 조사를 하여, 증인들의 진술이나 소문이나 간접 증거로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윤리적 확실성을 얻을 때에만 제1항에 언급된 선언을 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재만으로는 비록 장기간일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다.
③ 불확실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주교는 사도좌와 의논하여야 한다.

- 실종 신고에 관한 민법 -

제27조 (실종의 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제28조 (실종 신고의 효과) 실종 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실종 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거가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 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 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 (동시 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부재 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 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殘留者)에 대한 부재 신고(不在宣告)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잔류자"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부재 신고) 법원은 잔류자임이 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부재 선고의 효과) 부재 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이 경우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실종 선고의 효과(민법) -

제28조 (실종 선고의 효과)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14. 혼인 무효 선고를 위한 조사서/혼인 무효 선고서(혼인 양식 특5호)

14.1. 교회법적 형식의 결여에 따른 혼인 무효

- 혼인 당사자들 가운데 적어도 한편이라도 가톨릭 신자라면 혼인은 교회법적 형식에 따라, 곧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두 명의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교회법 제1108조 1항 참조).
- 따라서 이러한 교회법적 형식을 지키지 않은 혼인은 사회법적으로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교회법적으로는 무효이다.

- 관련 교회법 -

제1108조 ①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들 앞에서, 아래의 교회법 제조문들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 ……

제1117조 혼인 당사자들 중 적어도 한편만이라도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면 위에 규정된 형식이 지켜져야 한다. ……

- 관련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

제120조 (형식의 결여에 따른 무효 선고)

어떤 혼인이 교구 직권자의 관면 없이 가톨릭 혼인 예식을 거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실하면, 사제는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그 혼인이 무효임을 선고할 수 있다(교회법 제1108조; 전국 공용 교구사제특별권한, 제21조 참조).

14.2. 혼인 무효 선고를 위한 조사서/혼인 무효 선고서(혼인 양식 특5호)의 작성

- 이러한 혼인이 교회법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것을 본당 사목구 주임이 선언하는 문서이다.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훈령 「혼인의 존엄」(*Dignitas Connubii*) 제297조 2항과 제5조 3항에 따르면, 교회법상 혼인 형식을 지켜야 할 사람이 단순한 사회 예식으로

만 혼인하였거나, 또는 비가톨릭 교역자 앞에서 혼인한 경우, 이 혼인은 정식 재판이나 성사 보호관의 개입이 필요 없이 교회법 제1066-1071조에 따른 혼인 전 조사를 통하여 무효 선언을 할 수 있다.

- 한국 천주교회의 경우, 전국 공용 교구사제특별권한 제21조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20조에 따라 그러한 사실이 재판 외 약식 소송으로 확인되면, 사제는 교구 직권자에게 통보할 필요 없이 먼저의 혼인이 무효였음을 선고할 수 있다.
- 사제는 재판 외 약식 소송을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혼인 당시 당사자들 중 한편이나 양편이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여서 혼인의 교회법적 형식을 따를 의무가 있었다는 것/ 교구 직권자에게서 교회법상 혼인 형식의 관면을 받지 않았다는 것/ 가톨릭 교회 밖에서 혼인식을 올렸다는 것(타 종교 예식/ 단순한 사회 예식/혼인 예식 없이 혼인 신고만 한 경우)
- 이 무효 선고는 배우자들이 사회법적으로 이혼하고 새로운 혼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에 해 주어야 한다. 교회법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면, 본당 사목구 주임은 무효 선고를 하지 말고, 필요한 교회법적 형식으로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그 혼인을 교회법적으로 유효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 양편이 모두 다 비신자, 또는 비가톨릭(개신교) 세례자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교회법적 형식을 지킬 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러한 형식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 혼인은 유효하다.
- 이 무효 선고는 가톨릭 혼인 예식을 거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 만일 가톨릭 교회 혼인 예식으로 거행되었으나, 교회법 제1108조의 규정대로 주례권이 없는 이가 주례하였거나 입회 증인이 없었거나 한 명뿐이었을 때, 그 혼인의 무효에 대한 판결은 교회 법원에 유보된다(교회법 제1686조).

- 관련 교회법과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

<p>교회법 제1677조와 제1686조 규범을 따라 제출된 청원이 접수되면 사법 대리 또는 그에 따라 지명된 재판관은 어떠한 반박이나 항변의 여지도 없는 문서로 무효 장애의 존재나 합법적 형식의 결함이 확증되고, 또한 관면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대리인의 유효한 위임의 결여가 같은 확실성으로 분명하면, 통상적 소송 절차의 요식 행위를 생략하되 당사자들을 소환하고 성사 보호관의 관여 아래 혼인 무효를 판결로 선언할 수 있다.</p>
<p>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21조 (형식의 결함에 따른 무효 선고) 어떤 혼인이 가톨릭 혼인 예식으로 거행되었으나, 교회법 제1108조의 규정대로 주례권이 없는 이가 주례하였거나 입회 증인이 없었거나 1명뿐이었을 때, 그 혼인의 무효에 대한 판결은 교회 법원에 유보된다(교회법 제1686조; 전국 공용 교구사제특별권한, 제22조 참조).</p>

15. 근본 유효화(Sanatio in radice)

- 1) 혼인 당사자들이 원래 표명했던 합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들이 원하는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보는 혼인에 대한 치료로서 혼인 동의를 갱신이 요구되지 않는다.
- 2) 두 가지 특징
 - ① 자연적으로 표명된 혼인 동의를 지속되고 있다는 전제 아래,
 - ② 관할 권위의 개입으로, 혼인의 장애나 교회법적 형식을 관면함으로써, 혼인의 유효성에 장애되는 것들을 제거한다.
- 3) 근본 유효화의 효과는 두 당사자가 자연법적으로 충분한 혼인 동의를 표명했던 순간까지 소급하여 올라간다.

15.1. 근본 유효화에 관한 법률

15.1.1. 무효한 혼인의 근본 유효화란?

- 관련 교회법 -

제1161조 ① 무효한 혼인의 근본 유효화는 합의의 갱신이 없이 관할권자에 의하여 수여되는 유효화로서, 장애가 있거나 또한 교회법상 형식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그 관면뿐 아니라 교회법상 효과의 소급 적용도 수반하는 것이다.

② 이 유효화는 은전이 수여되는 시각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나 혼인 거행의 시각까지 효과가 소급됨을 뜻한다. 다만 달리 명시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본 유효화는 당사자들이 부부 생활을 보전하기를 원하는 개연성이 없는 한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 1) **정의:** 혼인 장애의 존재나 교회법상 형식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무효한 혼인을 교회 관할권자가 당사자들의 혼인 동의 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유효화시키는 도구.
- 2) **특징**
 - ① 무효 장애나 교회법적 형식의 결여에 따른 무효 혼인이어야 한다.
 - ② 교회 관할권자의 개입으로 이루어진다. 이 개입을 통하여 혼인 동의를 법률적 효과를 내는 데 장애가 되었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행정적 성격의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 ③ 어떤 방식으로든 혼인 동의를 표명되었고, 이미 표명한 합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혼인 동의는 혼인의 뿌리이다. 따라서 혼인 동의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이 혼인의 동의를 장애나 형식의 결함으로 손상을 입으면 혼인 유대

의 법률적 효과를 내지 못하게 되는데, 이 장애물이 제거되면 처음부터 존재했던 혼인 동의가 더 이상의 갱신 없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

- ④ 혼인 장애나 교회법적 형식에 대한 관면이 주어져야 한다.
- ⑤ 혼인 합의를 갱신할 의무가 면제된다.
- ⑥ 합의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제거(소멸이나 관면)되지 않고서는 그 혼인을 근본 유효화할 수 없다. 합의가 결함을 입는 경우는 무지(교회법 제1096조), 착오(제1097조), 사기(제1098조), 공포(제1103조), 배제(제1101조)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 ⑦ 근본 유효화의 은전이 수여되는 순간부터 혼인의 유효화가 이루어지며, 교회법상 효과는 ex tunc, 곧 혼인 거행의 시각까지 소급된다.
- ⑧ 허락의 조건: 근본 유효화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속하고 또 튼튼한 유대가 계속될 때에만 허락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혼인 생활이 지속되리라는 사실이 극히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근본 유효화를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15.1.2. 근본 유효화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 관련 교회법 -

제1164조 근본 유효화는 한편이나 양편 당사자가 모르게라도 유효하게 수여될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이유 때문이 아닌 한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 근본 유효화는 교회 관할권자의 권한에 따라 법률적 효과를 내는 것이므로, 동의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한편이나 양편 당사자가 모르게라도 수여할 수 있다.
- 곧 당사자 가운데 한편은 양심의 평화를 위하여 유효화를 원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혼인이 되어 있으므로 다시 합의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혼인 무효를 알고 있는 당사자만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서도 근본 유효화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중대한 이유(*gravis causa*)가 있어야 한다.
- 중대한 이유의 예:
 - ① 혼인 합의에 대한 갱신을 한편 당사자로부터 받아 낼 수 없는 경우
 - ② 한편만이 혼인의 무효를 알고 있고, 상대방에게는 밝히기가 지극히 곤란한 경우
 - ③ 당사자들 모두가 혼인의 무효를 모르고 있고, 또한 그 장애를 밝힐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주례자의 실수 등)
 - ④ 당사자들 양편이 장애를 알고 있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합의를 갱신하도록 상대방을 유도할 수 없는 경우

15.1.3. 근본 유효화의 허락권자

- 관련 교회법 -

제1165조 ① 근본 유효화는 사도좌로부터 수여될 수 있다.

②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개별적인 경우에 비록 동일한 혼인에 여러 가지 무효 사유들이 겹쳐 있다라도 근본 유효화가 수여될 수 있다.

15.2. 문서의 작성

15.2.1.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청원자의 진술서(혼인 양식 특6호)

- 1) 사제가 청원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이 문서를 작성한다. 청원자의 배우자는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혼인 양식 제2호)를 작성해야 하나,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만의 청원으로도 근본 유효화가 청원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진술서는 생략될 수 있다.
- 2) 사제는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청원자의 진술서’와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사제의 건의서’(혼인 양식 특7호)를 작성하여 교구 법원으로 보내면 된다. 기타 필요한 서류는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사제의 건의서’ 뒷면에 있는 교구청 제출 서류를 참조한다.
- 3) 4항과 6항의 (4)에서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현재의 혼인 이전에 다른 혼인이 있었다면, 첫 번째 혼인이 무효로 판결, 또는 선고받아야 한다.
- 4) 6항의 (7)에서는 사제 앞에서 교회법대로 혼인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예) 지금의 배우자가 교회 예식의 필요성을 납득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경우, 병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그러나 만일 이미 배우자가 혼인 동의를 철회하고 떠나갔다고 한다면 근본 유효화가 수여될 수 없다.
- 5) 6항의 (9)-(10)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 동의를 혼인 당시에(사회법적으로라도) 표명되었고, 지금까지 철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 6) 6항의 (8)과 (11)-(17)은 “4.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의 관련 설명 참조.
- 7) 6항의 (18)은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통해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이 완전한 혼인이 된다는 것을 교육하고 확인받는다.

15.2.2.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사제의 건의서(혼인 양식 특7호)

- 사제는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청원하는 당사자의 혼인 무효 사실과 교회에 나와서 혼인 합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을 기록하여 건의서를 작성한 다음, 교구청에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청원자의 진술서’(혼인 양식 특6호)와 함께 제출한다.

15.2.3. 혼인의 근본 유효화 인정서(혼인 양식 특8호)

- 교구 직권자가 이를 작성하여, 교구청에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본당에 보내 주면, 본당에서는 혼인성사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혼인 문서 봉투에 넣어 본당에서 보관한다.